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39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2월 23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7년 9월 27일 김태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2102)과 2017년 11월 28일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2298) 이상 2건을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2018.2.23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“정보취약계층”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“정보취약계층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(안 제2조제9호 신설).
-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3항제5호).
-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3조).
-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,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35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,
「정부조직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"정보취약계층"이란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등 신체적·사회적·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.

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, 인터넷 중독 예방·해소에 관한 사항

제7조제4항 중 "시의원"을 "서울특별시의회 의원"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9. ~ 14. (생략)</p> <p>제5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정보격차해소, 인터넷 중독 예방·해소</u></p> <p>6. ~ 1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"정보취약계층"이란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등 신체적·사회적·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.</u></p> <p>10. ~ 15. (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)</p> <p>제5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, 인터넷 중독 예방·해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7조(위원회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원은 학계·언론계·기업계·민간단체·시의원·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5조(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)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학계·언론계·기업계·민간단체·서울특별시의회의원·공무원 -----
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수당 등) -----

--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-----
<삭제>

제35조(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) ---

-----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-----

--.